

의료법				번호: IV - B - 9	
제 목	국문	현행 보건의료법률의 재정관련 규정 분석			
	영문	The Analysis of Provision on Finances in Korean Health Care Law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정영철 <sup>1)</sup> , 이충완 <sup>2)</sup> , 손명세 <sup>3)</sup>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Jung Young-Chul, Lee Choong-Wan, Sohn Myong-Sei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Medical College of Yonsei University <sup>1)</sup> , Department of PublicHealth,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up>2)</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Medicine, Yonsei University <sup>3)</sup>			
분 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 표 자	정영철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오늘날 국민들에게 커다란 관심사는 건강한 삶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위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의 전제 조건인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보건복지예산의 추이나 현황 등에 관한 연구와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단일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건의료관련법률들에 규정된 재정관련 규정들과 비교·분석하여 보건의료관련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예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p> <p>즉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건의료법률 전반에 나타난 재정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관련 예산과 관련된 보건의료법률의 재정관련 규정의 구조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기능의 효율화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한 자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p> <p>2. 연구방법</p> <p>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를 재정학 또는 재무행정학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둘째, 예산과 법률은 서로 독립해서 성립하고 기능하지만 예산과 법률의 상호간에는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예산의 법적 성격·근거 그리고 예산법의 기본원칙 등을 고찰하여 현행 보건의료법률의 재정관련규정을 분석하는 기준을 정립할 것이다. 셋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부문에 배정된 예산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법률의 개별법마다 세출예산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계량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현행 보건의료법률 각 개별법의 세출예산의 정당성 및 합법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법률의 재정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에</p>					

산과 법률간의 불일치를 감소시켜 법률에 근거한 예산의 집행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률과 예산간의 상호 기능적인 일치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3. 연구 결과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예산이라는 재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산(budge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간)을 통한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인 계획으로, 이 계획에는 정부경제의 목적, 개별수입, 제지출계획 및 그 규모와 한계가 숫자로 표현된다. 이러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데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計理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그러므로 흔히 예산이라고 하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에 속하는 재원조달이 사회보장관련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실질적인 재원조달은 미흡한 상태이다. 예산 완전성의 원칙, 예산단일성의 원칙 등 이른바 예산원칙은 예산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민주주의원칙을 실현하고 자의적인 예산운영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 우리 나라 보건의료법규체계를 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섯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개별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에 따라 ①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가의 공공보건의료행정에 관한 법률 ③ 특정인구집단의 건강관리에 관한 법률 ④ 관리대상질병관리에 관한 법률 ⑤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수단"인 보건의료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건의료법률에는 재정지출의 근거규정과 재정지출을 가능케 할 재원조달방안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은 입법정책론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법률은 재정지출의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에 대한 재원조달규정은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법률 체계의 운영에는 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되는 재원조달체계가 주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사회보장관련법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타 보건의료법률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건의료법률에서 혈액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은 재정지출의 근거규정이 미약한 상태이고 의료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구강보건법 등은 재원조달방안 규정이 결여된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약사법은 제72조의7에서 신약개발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둬으로써 재정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재정관련규정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볼 때는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재정관련규정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 4. 고찰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조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지만 이는 재정학 내지는 정책학의 연구 범위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의 입법형식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의 근거규정의 입법형식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의 형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필요불가결한 보건의료사업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가는 ~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필요적·강행적 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보건의료법률의 재정관련규정을 필요적 규정으로 바꿀 필요도, 바꿀 가능성도 없겠지만 적어도 강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염병예방이나 질병의 관리나 예방,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확충에 관련된 법규의 규정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